##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7 발의연월일: 2020. 6. 8.

발 의 자:이원욱·허 영·윤후덕

전용기 · 김철민 · 김성환

김병욱 · 홍익표 · 장경태

김영주 · 정청래 · 한병도

홍성국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벤처캐피탈(Venture Capital)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로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음.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자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되면서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'금융업 또는 보험업'의 대상에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

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2항제5호). 법률 제 호

####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의 조 번호를 "제8조의2"로 하고, 제8조의2제2항제5호 본문 중 "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"를 "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"로, "一般持株會社"를 "일반지주회사"로, "金融業"을 "금융업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, "保險業을"을 "보험업을"로, "國內會社의株式을 所有하는"을 "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8條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	<u>제8조의2</u> 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
한 등) ① (생 략)	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	②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	
하여서는 아니된다.	<u>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	5.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
(이하 " <u>一般持株會社</u> "라 한	<u>일반지주회사</u>
다)인 경우 <u>金融業</u> 또는 <u>保險</u>	<u>금융업(「중소기</u>
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	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중소
式을 所有하는 행위. 다만, 일	기업창업투자회사 및 「여신
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	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
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	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
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	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 이
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	<u>하 이 조에서 같다)보</u>
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	<u>험업을국내회사의 주</u>
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	<u>식을 소유하는</u>
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	
있다.	

	<b>–</b> .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